

# 당진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33호 2020. 12. 15.(화)

## 훈 령

- 제111호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제112호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 폐지규정..... 3

## 고 시

- 제2020-276호 도로명주소 고시..... 4
- 제2020-279호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7
- 제2020-282호 도로명주소 고시..... 12
- 제2020-28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
- 제2020-284호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2
- 제2020-285호 한진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4
- 제2020-28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
-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

## 공 고

- 제2020-2199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0
- 제2020-2207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2
- 제2020-2235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4
- 제2020-2266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2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2월 15일

당진시 훈령 제111호

###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당진시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p> <p>1. 본 청</p> <p>가.·나. (생략)</p> <p>다.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정보과장, 토지관리과장, <u>경제에너지과장</u>, 도시재생과장</p> <p>라. (생략)</p>	<p>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 -----, <u>경제과장</u>, -----</p> <p>라. (현행과 같음)</p>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2월 15일

당진시 훈령 제112호

###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 폐지규정

당진시 국제간 자매결연 사후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고시 제2020-276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30.

###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861-1 외 14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699 외 1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30.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1/30 >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석문면 교로리 540-15	석문면 대호만로 1861-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대호방조제를 가는 도로
2	석문면 교로리 540-16	석문면 대호만로 1863-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대호방조제를 가는 도로
3	면천면 죽동리 302-1	면천면 아미로 394-8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의 명산 아미산을 가는 도로
4	대덕동 1013-9, 1013-11	아미로 697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의 명산 아미산을 가는 도로
5	정미면 대조리 149-10	정미면 한새울로 36-5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한새울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합덕읍 운산리 401-1	합덕읍 합덕시장로 1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합덕시장을 통과하는 중심도로
7	순성면 양유리 310	순성면 매실로 81-6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의 매실의 명칭 활용
8	신평면 금천리 343	신평면 신평로 789-1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신평면을 지나는 도로
9	읍내동 281-1	계성2길 3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행정리명칭 활용
10	송산면 매곡리 460-11	송산면 구슬고개길 52-5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구슬고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송악읍 중흥리 128-6	송악읍 길마재길 33-21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마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읍내동 145-9	당진시장서길 14-19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시장의 서쪽길
13	신평면 신당리 53-1	신평면 신당길 130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14	고대면 황곡리 255	고대면 황곡3길 36-8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15	고대면 황곡리 538	고대면 황곡3길 74-62	2020-11-30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대호지면 적서리 271	대호지면 한다리길 20	2012-01-01	단순명칭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한다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합덕읍 성동리 200	합덕읍 성동로 139-68	2012-01-01	단순명칭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1/30 〉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대덕동 1013-2	아미로 699	2020-11-30	건물멸실	
2	수청동 488	고실2길 15-13	2020-11-30	건물멸실	

당진시 고시 2020-279호

##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수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12. 8.

당진시장

### □ 부분변경 내용

#### ○ 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 1. 개요

가. 목적 : 수도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나. 내용 :

- 수질취약구간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수질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관세척, 자동드레인)
- 2차사고 방지 및 수량감시 기능 보강
- 수도물 신뢰제고 서비스 기반 마련

다. 사업위치 : 당진시 전역

라. 사업기간 : 2021년~2022년

마. 총사업비 : 6,700백만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참고

##### 2. 사업시행계획

- 2021~2022년 2개년간 총 6,700백만원 투자예정

## - 부분변경 승인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	2022
<b>총합계</b>	<b>6,720</b>	<b>3,360</b>	<b>3,360</b>
설계비	320	160	160
공사비	6,304	3,152	3,152
정밀여과장치	900	450	450
수질측정장치	배수지	120	60
	관로상	1,200	600
관세척	800	400	400
자동드레인	900	450	450
소규모 수량·수압감시시스템	450	225	225
스마트미터	1,000	500	500
스마트 수압계	300	150	150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장비	30	15
	센서	4	2
시스템 구축	600	300	300
<b>시설부대비</b>	<b>96</b>	<b>48</b>	<b>48</b>
초기투자비(장비)	96	48	48

※ 환경부의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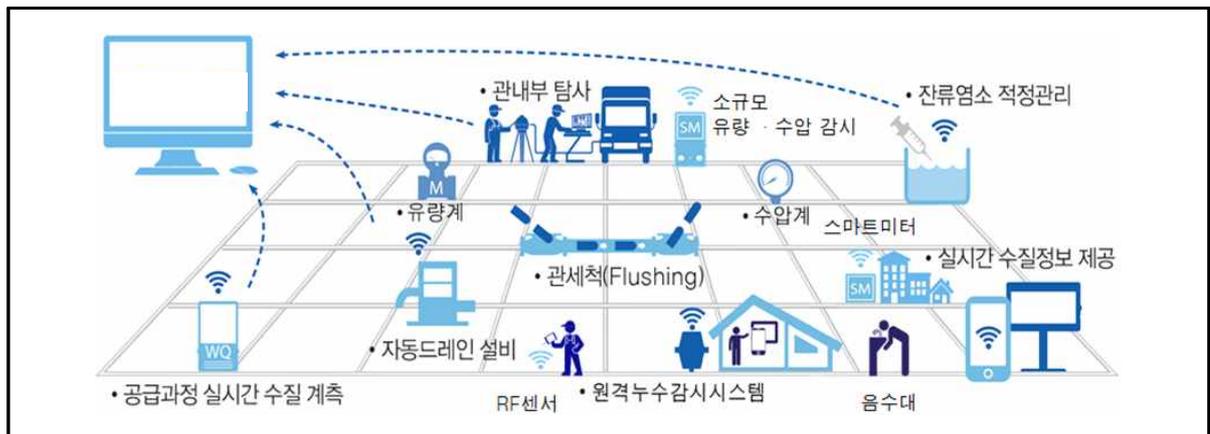
## <당진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계획>

### 가. 개요

당진시는 상수도 수질사고 등에 적기 대응 가능한 현대화된 관망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예정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2021년 사업추진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사고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나. 목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마트 관망관리 개념도

### 다. 적용 기술

스마트 관망관리는 수질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 수돗물 신뢰제고 등의 목적으로 11개 기술이 적용된다. 각 기술별 목적과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목적 및 적용기준(안)
수질관리	재염소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관말까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를 확보하고 시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수지에 재염소설비 제조구매 설치</li> <li>○(기준) 관망해석 결과, 잔류염소 농도 취약지점(0.1mg/L 미만), 시간적·공간적 균등화가 필요한 배수구역</li> </ul>
	정밀여과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이물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수분관에 정밀여과장치(마이크로 필터) 제조구매 설치</li> <li>○(기준) 시설정보, 수질민원, 수도꼭지 수질조사 결과를 관망도상에 중복 투영하여 공간적 분석을 통해 구간 선정</li> </ul>
수질감시	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수도법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질계측기 제조구매 설치</li> <li>○(기준) 사업장(정수지 및 시설용량 250m<sup>3</sup> 이상의 배수지)</li> </ul>
	수질측정장치 관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공급 초과과정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로상에 수질계측기 제조구매 설치</li> <li>○(기준) 관망해석 결과, 배수지로부터 도달시간이 24시간 이상 되는 지점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거나 감시구역내 전체 도달시간을 감안하여 48시간 이내에서 위치 조정</li> </ul>
위기대응	관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관로 내부에 축적된 미세한 이물질이나 내부 도장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목적으로 관세척 인프라 설치</li> <li>○(기준) 수질민원, 관망해석을 통한 수리취약구간 분석, 수도꼭지 수질조사 결과를 관망도상에 중복 투영하여 공간적 분석을 통해 구간 선정</li> <li>* (취약구간) 유속이 0.01m/s 이하인 구간, 체류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구간</li> </ul>
	자동드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관망내 이상수질(탁도, 잔류염소) 발생시 오염물질을 외부로 자동 배출하는 장치를 제조구매 설치</li> <li>○(기준) 관망해석 결과, 관 말단 또는 정체구간 등 저유속, 과체류시간 (72시간 이상)으로 잔류염소 부족(0.1mg/L 미만)이 우려되는 구간, 입자성 물질이 빈번하게 유출되어 수질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구간</li> </ul>
재발방지	소규모 유량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기존 급수구역(블록시스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급수구역을 분할하고 유량·수압을 감시하여 대규모 누수사고(Bursting) 예방</li> <li>○(기준) 500가구 단위로 소규모 유량·수압감시 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되, 필요시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 내 500가구 미만의 일부 급수구역에 대해 설치 가능</li> </ul>
	스마트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스마트미터 구매·설치</li> <li>○(기준) 인력검침 곤란지역, 사회취약계층, 대수용가 대상 설치</li> <li>* (대수용가) 일반적으로 사용량 기준 상위 5% 수용가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li> </ul>
	스마트수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블록별 주요지점(유입, 임계지점, 평균지점, 대수용가 등)에 대해 주기적인 수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li> <li>○(기준) 소블록당 분기별 1회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 구매</li> <li>* 수압계 1 SET로 10개 소블록 운영 가능</li> </ul>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주요 관로 위치를 전산화를 위해 관련 장비 및 센서 구매</li> <li>○(기준) 관로 신설, 이설, 노후관 교체 등 대규모 터파기 공사 시행시 설치, 누수복구 등 소규모 터파기 공사 시행시 복구지점에 센서 설치</li> <li>* (직선구간) 지방지역 1개소/50m, 도시지역 1개소/20m</li> <li>* (곡선 및 분기구간) 시·중·종점부 1개소씩 설치, 다음 구간은 10m 이내 설치</li> </ul>
수돗물 신뢰제고	워터코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수질관리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장비 구매</li> <li>○(기준) 가구수 기준 10년에 1회 이상 (전체 가구수 10%)</li> </ul>

## 라. 사업시행계획

당진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6,720백만원을 2년간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에 총 사업비의 50%인 3,360백만원을 투자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3,36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2020년에 시행 중인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총 사업비 및 사업별 규모는 조정될 예정이다.

### <세부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	2022
총합계		6,720	3,360	3,360
설계비		320	160	160
공사비		6,304	3,152	3,152
정밀여과장치		900	450	450
수질측정장치	배수지	120	60	60
	관로상	1,200	600	600
관세척		800	400	400
자동드레인		900	450	450
소규모 수량·수압감시시스템		450	225	225
스마트미터		1,000	500	500
스마트 수압계		300	150	150
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장비	30	15	15
	센서	4	2	2
시스템 구축		600	300	300
시설부대비		96	48	48
초기투자비(장비)		96	48	48

※ 환경부의 “전국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당진시 고시 제2020-282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7.

##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회천로 619 외 10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699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28 외 3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폐지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7.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2/7〉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정미면 도산리 420-2	정미면 최천로 61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09-08-25	지역 지명 활용[최천고개]
2	순성면 광천리 85-54	순성면 본리로 20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3	송산면 매곡리 249-6	송산면 송산로 297-15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송산면을 지나는 도로
4	석문면 장고항리 491-2	석문면 장고항로 278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5	송산면 매곡리 462-1	송산면 구슬고개길 52-4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구슬고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순성면 백석리 산81-1	순성면 백석길 71-26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7	우강면 부장리 64	우강면 부장2길 109-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 명칭 활용
8	송산면 부곡리 255	송산면 정골길 9-1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정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대호지면 조금리 470-6	대호지면 지방꽃이길 139-44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조금리의 옛 마을명칭인 지방꽃이를 활용
10	순성면 봉소리 762-2	순성면 활랑길 103-4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활랑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송악읍 금곡리 204-95	송악읍 샘마을길 73-9	2020-12-07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9-12-17	해당 마을단지에 큰 샘이 있었다고 함
	채운동 992-93	어리로 19	2012-01-01	단순변경 (멸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어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 12/7〉						
NO	지번주소(토지지번)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자	건물번호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1	대덕동 1013-9	아미로 697	아미로 699	2020-12-07	건물번호 변경신청	

###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2/7 〉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순성면 광천리 85-41	순성면 본리로 28	2020-12-07	건물멸실	
2	송악읍 광명리 147	송악읍 광명길 91-16	2020-12-07	건물멸실	
3	수청동 575	고실2길 69	2020-12-07	건물멸실	
4	송산면 송석리 산45	송산면 송산로 297-25	2020-12-07	폐가	

## 당진시 고시 제2020-283호

###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당진시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1,200)
  - 기반시설계획도(축척 1/1,200)
  - 가구 및 획지 계획도(축척 1/1,200)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축척 1/1,200)
  - 교통처리계획도(축척 1/1,200)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붙임 : 당진 도시관리계획(송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893	송산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5-17번지 일원	-	84,221	당진시 고시 제2019-226호 (2019년 10월21일)	
변경	893	송산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	83,889		측량성과 반영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93	송산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구 면적변경</li> <li>- 기 정 : 84,221㎡</li> <li>- 변 경 : 감)332㎡</li> <li>- 변경후 : 83,889㎡</li> </ul>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93	송산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84,221	감)332	83,889	측량성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93	송산3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면적변경</li> <li>- 기 정 : 84,221㎡</li> <li>- 변 경 : 감)332㎡</li> <li>- 변경후 : 83,889㎡</li> </ul>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84,221	감)332	83,889	100.00	-	100.00	측량성과 반영
공업용지	54,605	감)261	54,344	64.8	-	64.8	
유통용지	7,180	감) 8	7,172	8.5	-	8.5	
녹지용지	14,466	감) 40	14,426	17.2	-	17.2	
공공시설용지	7,970	감) 23	7,947	9.5	-	9.5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업용지	▪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업용지 감소 (54,605㎡ → 54,344㎡ : 감) 261㎡)
유통용지	▪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유통용지 감소 (7,180㎡ → 7,172㎡ : 감) 8㎡)
녹지용지	▪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녹지용지 감소 (14,466㎡ → 14,426㎡ : 감) 40㎡)
공공시설용지	▪ 면적감소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감소 (7,970㎡ → 7,947㎡ : 감) 23㎡)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중로	3	542	7,970	감)23	7,947	-	-	-	-	-	1	336	5,122	감)4	5,118	2	206	2,848	감)19	2,82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823	15	국지 도로	336	우강면 송산리 557-16번지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당진고제226호 2019.10.21	측량 반영 및 가각 부 정리
변경	중로	2	823	15	국지 도로	336	우강면 송산리 557-16번지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59	12	국지 도로	153	중로2-823	우강면 송산리 산67-5번지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859	12	국지 도로	153	중로2-823	우강면 송산리 555-16번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60	14	국지 도로	53	우강면 송산리 557-26번지	중로3-859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860	14	국지 도로	53	우강면 송산리 557-26번지	중로3-859	일반 도로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변경

도면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	A-BL	54,605	A-1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45,158	A-BL	54,344	A-1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44,908	공업용지
			A-2	송산리 555-17번지 일원	9,447			A-2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9,436	공업용지
	7,180	A-3	송산리 555-17번지 일원	3,815	7,172	A-3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3,929	유통용지		
		A-4	송산리 557-17번지 일원	3,365		A-4	송산리 557-16번지 일원	3,243	유통용지		
	14,466	A-5	송산리 557-16번지 일원	10,224	14,515	A-5	송산리 557-16번지 일원	10,173	녹지용지		
		A-6	송산리 557-16번지 일원	3,373		A-6	송산리 557-16번지 일원	3,402	농업기반시설설치		
		A-7	송산리 557-26번지 일원	462		A-7	송산리 557-26번지 일원	441	녹지용지		
		A-8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407		A-8	송산리 555-16번지 일원	410	농업기반시설설치		
합 계				76,251	합 계		75,942	감)309㎡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 A가구 : 76,251㎡ → 76,942㎡[감] 309㎡(측량성과 반영) - A-1 획지 : 45,158㎡ → 44,908㎡[감] 250㎡(측량성과 반영 및 획지선 변경) - A-2 획지 : 9,447㎡ → 9,436㎡[감] 11㎡(측량성과 반영 및 획지선 변경) - A-3 획지 : 3,815㎡ → 3,929㎡[증] 114㎡(측량성과 반영) - A-4 획지 : 3,365㎡ → 3,243㎡[감] 122㎡(측량성과 반영) - A-5 획지 : 10,224㎡ → 10,173㎡[감] 51㎡(측량성과 반영 및 획지선 변경) - A-6 획지 : 3,373㎡ → 3,402㎡[증] 29㎡(측량성과 반영 및 획지선 변경) - A-7 획지 : 462㎡ → 441㎡[감] 21㎡(측량성과 반영) - A-8 획지 : 407㎡ → 410㎡[증] 3㎡(측량성과 반영)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공업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 도	허용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기타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A-2	용 도	허용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기타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나. 유통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3 A-4	용 도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단,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가로 및 교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덕평로상 가·감속차로 확보</li> <li>- 진출입구 : 감속차로(B=4.0m, L=40.0m, 테이퍼 10m포함)</li> <li>- 주·부출입구간 : 가·감속연결차로 설치(B=4.0m, L=76.0m)</li> <li>- 부출입구 : 가속차로(B=4.0m, L=60.0m, 테이퍼 15m포함)</li> <li>• 사업지 내부도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li> <li>• 사업지 진출입구교차로 신설 및 점멸신호 운영계획 수립</li> <li>• 사업지 부출입구교차로 신설 및 점멸신호 운영계획 수립</li> </ul>
진출입 동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 주·부출입구 각각부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R=15m)</li> <li>• 사업지내 내부도로(중로) 각각부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R=12m)</li> </ul>
대중교통 및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 내부 중로 이상 도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B=2.0m)</li> <li>• 덕평로상 사업지측(주출입구~덕평삼거리 버스정류장 구간)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B=2.5m)</li> <li>•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2개소)</li> <li>• 박원로 삼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 및 집중조명시설 설치</li> </ul>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획지별 개별 건축물 건축시 법정주차 대수 이상 주차면수 확보</li> <li>• 공장용지 개별 건축물 건축시 대형화물차량 주차계획 수립 필요</li> </ul>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출입구에 불법회전차량 방지를 위한 화단 및 안전시설물 설치</li> <li>• 진출입구에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1개소)</li> <li>•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li> </ul>

당진시 고시 제2020-284호

##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당진시장



1. 사업의 명칭 :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7,978백만원(국비 5,584, 지방비 2,393)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선착장 증고 및 보수, 요트무어링 설치, 부잔교 설치
- 특화사업 : 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기존 조형물 및 무대철거, 기존 공원 리모델링, 가로등 개선, 차양시설 설치, 해변경관조명 설치, 기존 샤워장 철거 및 신설, 휴게시설 조성, 마을 안내사인 설치
- S/W사업 : 지역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운영

## 2) 사업의 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항 및 배후마을 일원

##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 7.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조서” 참조

##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041-350-4282) 및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041-351-9168)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시 · 군	읍 · 면	리						
1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26	대	398	398	당진시	마을 커뮤니티센터
2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5	전	640	640	당진시	기존 공원 리모델링
3	당 진 시	석 문 면	교 로 리	844-6	잡	442	442	당진시	기존 공원 리모델링

※ 토지명세 및 편입면적은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 고시 제2020-285호

## 한진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당진시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7,680백만원(국비 5,376, 지방비 2,304)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1)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호안정비, 선착장 정비
- 특화사업 : 한진복합센터, 큰나루광장, 일출전망쉼터, 당집 연결로
- SW사업 : 지역역량강화(교육, 홍보, 마케팅 등),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 2) 사업의 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리 일원(한진포구)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조서” 참조

##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041-350-4282)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팀(☎ 02-6098-0817)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리						
1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7	주차장	4,166	4,078	당진시	한진 복합센터
2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8	제방	108	108	국(해양수산부)	
3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3	잡종지	477	110	충청남도	
4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5	대	2,080	138	당진시	
5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22	잡종지	270	270	국(기획재정부)	큰나루 광장조성
6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4	잡종지	155	155	충청남도	선착장정비

※ 토지명세 및 편입면적은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진시 고시 제2020-286호

###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2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당진시장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2.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게재 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축척 1/1,000)
3.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주차장

#####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23	주차장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6,216	증)250	6,466	당진고시 제122호 (2019.6.28.)	

#####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823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A= 6,216㎡</li> <li>- 변경: A= 6,466㎡</li> <li>증) A=25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조건부 협의결과에 따라 자투리 농지(250㎡)를 사업부지에 포함</li> </ul>

## 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당진시장

#### 가. 제한지역

구역명	위치	제한면적(m <sup>2</sup> )	비고
합계		432,464	18개소
당진-행위제한-01	우두동 567-4 일원	107,223	
당진-행위제한-02	채운동 산105-2 일원	66,535	
당진-행위제한-03	읍내동 609-3 일원	13,608	
당진-행위제한-04	읍내동 277-36 일원	763	
당진-행위제한-05	수청동 산146 일원	131,641	
당진-행위제한-06	읍내동 599-2 일원	1,695	
당진-행위제한-07	채운동 100-12 일원	5,431	
합덕-행위제한-01	우강면 송산리 424-36 일원	4,896	
합덕-행위제한-02	우강면 송산리 산96-17 일원	61,320	
합덕-행위제한-03	합덕읍 운산리 45-7 일원	252	
합덕-행위제한-04	우강면 창리 226-9 일원	2,007	
합덕-행위제한-05	합덕읍 운산리 656-14 일원	2,401	
합덕-행위제한-06	합덕읍 운산리 343-5 일원	4,098	
합덕-행위제한-07	합덕읍 운산리 396-3 일원	3,155	
합덕-행위제한-08	합덕읍 운산리 109-24 일원	2,508	
합덕-행위제한-09	합덕읍 합덕리 260-8 일원	4,648	
합덕-행위제한-10	합덕읍 운산리 167-2 일원	12,981	
송악-행위제한-01	송악읍 가학리 620-34 일원	7,302	

※ 행위제한지역은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

### 나.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지로서 개발행위 발생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및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유도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 다.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공작물 설치 포함)
- 기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전까지)

### 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당진시 공고 제2020-2199호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 당진시장

1. 조례명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9.12.03.공포, 2020.06.04.시행)」에 맞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제4조)
-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별표 1, 별표 2)
- 지원단 설치·재난상황 공유·보고·자원봉사활동 평가기록(안 제7조·제8조·제9조)

#### 4. 의견제출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직접방문, 팩스(연락요망)
- 마.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041)350-3666
  - 팩 스: 041)350-3679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9.12.03.공포, 2020.06.04.시행)에 맞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제4조)
- 다.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별표 1, 별표 2)
- 라. 지원단 설치·재난상황 공유·보고·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안 제7조·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1)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여성가족과-32240(2020.11.17.))
  - 2) 행정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입법예고(2020. 11. 30. ~ 12. 21.) :

## 당진시 조례 제 호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당진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

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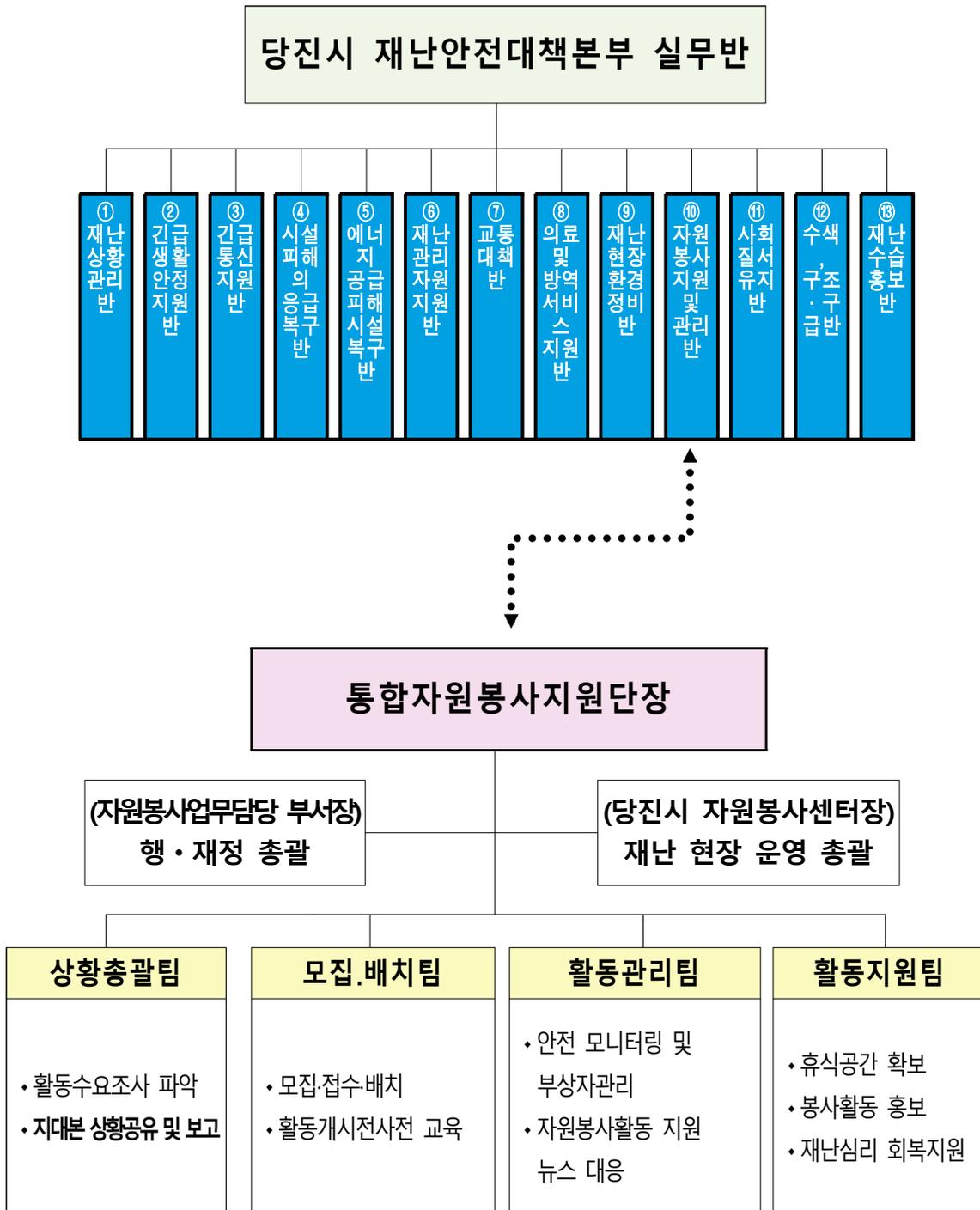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직무분담표 >**

팀명	구 성	담 당 사 무
단 장	공무원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또는 당진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민간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과장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팀장 이름: 000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당진시 자원봉사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이름: 000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 관계 법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당진시 공고 제2020-2207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당진시장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5.1 공포 7.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종전 조례 제7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서 가맹점의 등록 방법, 등록 기준, 자격 요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 용어 정비(지정 ⇨ 등록)

- 종전 조례 7조를 안 제7조(가맹점 등록 등)과 안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로 분리 하고 가맹점의 등록 취소 시 당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항 신설

나. 판매대행점 협약할 때 당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다. 관련 서식 정비(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 3.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2.(21일간)

###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2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경제과(지역경제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17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hj0357@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의 건	비 고

##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을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한다.

제7조의 제목“(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를“(가맹점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한다”를 “등록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지정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하지”를 “등록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7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을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으로, “지정사항 변경”을 “등록사항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지정서를 교부한다”를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계약”을 “등록”으로, “지정해지”를 “등록해지”로, “해지 신청을”을 “등록해지 신청을”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신청”을 “등록을 신청”으로, “지정을 아니”를 “등록을 거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생략)

②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 등록하지 -----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3. (현행과 같음)

② ----- 등록 -----  
-----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  
----- 등록  
사항 변경 -----  
-----.

③ ----- 등록 신청서-----  
-----  
-----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 등록-----  
-----  
- 등록해지 -----  
- 등록해지 신청 -----.

⑤ ----- 등록  
을 신청-----  
----- 등록을 거부-----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4. (생략)

⑥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⑦ 그 밖에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법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3. 4.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  
-----  
-----

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략)

----- .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당진사랑상품권 <b>가맹점 지정</b> 변경 신청서</h3> <p>(가맹점 번호 :            호)</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인</td> <td>대표자</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상 호</td> <td></td> <td>사업자 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 소 소재지</td> <td></td> <td>전화번호</td> <td>(휴대폰 :            )</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변경 전</td>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변경 후</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margin-top: 10px;">표준규약</p> <p style="font-size: small;">「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b>가맹점 지정</b>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large;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0%; font-size: x-small;">구비서류</td> <td style="font-size: x-small;">                     1. <b>가맹점 지정</b>서 원본                      2. <b>가맹점 지정</b>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td> </tr> </table> </div>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구비서류	1. <b>가맹점 지정</b> 서 원본 2. <b>가맹점 지정</b>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h3 style="margin: 0;">당진사랑상품권 <b>가맹점 등록</b> 변경 신청서</h3> <p>(가맹점 번호 :            호)</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청인</td> <td>대표자</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상 호</td> <td></td> <td>사업자 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 소 소재지</td> <td></td> <td>전화번호</td> <td>(휴대폰 :            )</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변경 전</td> <td style="width:50%; text-align: center;">변경 후</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margin-top: 10px;">변경사유</p> <p style="font-size: small;">「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b>가맹점 등록</b>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large;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0%; font-size: x-small;">구비서류</td> <td style="font-size: x-small;">                     1. <b>가맹점 등록</b>서 원본                      2. <b>가맹점 등록</b>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td> </tr> </table> </div>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구비서류	1. <b>가맹점 등록</b> 서 원본 2. <b>가맹점 등록</b>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구비서류	1. <b>가맹점 지정</b> 서 원본 2. <b>가맹점 지정</b>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구비서류	1. <b>가맹점 등록</b> 서 원본 2. <b>가맹점 등록</b>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h3 style="margin: 0;">당진사랑상품권 <u>가맹점 지정</u>해지 신청서</h3>	<h3 style="margin: 0;">당진사랑상품권 <u>가맹점 등록</u>해지 신청서</h3>																																		
(가맹점 번호: )	(가맹점 번호: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상 호</td> <td></td> <td>사업자 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 소 소재지</td> <td></td> <td>전화번호</td> <td>(휴대폰 : )</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상 호</td> <td></td> <td>사업자 등록번호</td> <td></td> </tr> <tr> <td>업 소 소재지</td> <td></td> <td>전화번호</td> <td>(휴대폰 : )</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사 유	사 유																																		
<p>「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u>가맹점 지정</u>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b>당진시장 귀하</b></p>	<p>「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u>가맹점 등록</u>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b>당진시장 귀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구비서류</td> <td><u>가맹점 지정</u>서 원본</td> </tr> </table>	구비서류	<u>가맹점 지정</u> 서 원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구비서류</td> <td><u>가맹점 등록</u>서 원본</td> </tr> </table>	구비서류	<u>가맹점 등록</u> 서 원본																														
구비서류	<u>가맹점 지정</u> 서 원본																																		
구비서류	<u>가맹점 등록</u> 서 원본																																		

당진시 공고 제2020-2235호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 당진시장

1. 조례명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가스가 도심위주로 보급되면서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미공급 사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 보조 관련

- 용어정의 신설(“본관”, “공급시설”) (안 제2조제2호·제5호)
- 보조금 지원 대상의 완화(10명→5명) (안 제3조제1항)
- 보조금 지원 시설 확대(공급관→공급시설) (안 제4조제1항·2항)
-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100만원→200만원) (안 제4조제3항)

나.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관련

- 위원회 양성평등 문구 명시 (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임기 명시 (안 제6조제7항)

다. 맞춤형 정비 및 인용조항 수정

#### 4. 의견제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12월 23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에너지자원팀)
  - 전 화: 041)350-4091
  - 팩 스: 041)350-4099
  - 이메일: ch3692@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당진시장(이하“시장”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39세대 이하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 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
-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2. 차상위 장애인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
4. 차상위 자활자 가구
5. 한부모 가족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200만원 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

급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관계기관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당진시의회 의원 1명 이상
  4. 도시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명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6.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당진시 공고 제2020-2266호

###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 당진시장

1. 조례명 :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과 유사한 다수 시책을 대기업과의 간담회, 산업단지협의회, 산·학·연 정례회 등을 구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협의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미운영 위원회의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5장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이동(안 제14조~제17조)  
- “기업사랑 협의회”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5. 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20. 12. 8. ~ 2020. 12. 29.(21일간)

###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9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팩스(연락요망)

마.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청 경제과(기업지원팀)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 전 화: 041)350-4028

- 팩 스: 041)350-4049

##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과 유사한 다수 시책을 대기업과의 간담회, 산업단지협의회, 산·학·연 정례회 등을 구성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협의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미운영 위원회의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5장을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이동(안 제14조~제17조)
  - “기업사랑 협의회”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A충남당진147)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 ~ . . )결과

당진시 조례 제 호

##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기업사랑 협의회”를 “기업 관련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기업 관련단체 지원”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새로운 시책 발굴</u></p> <p><u>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4. 기업관련 애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p> <p><u>제16조(협의회원의 수당) 협의회</u> <u>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6장 기업 관련단체 지원</u></p> <p><u>제17조 ~ 제19조 (생 략)</u></p> <p><u>제20조 (생 략)</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u></p> <p><u>제17조 (현행 제20조와 같음)</u></p>
--	---

<b>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20A충남당진147		
정책명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방은희	전화번호 041-350-406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1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과)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에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요, 성별특성 반영 해당사항 없음, 성별균형 참여 해당사항 없음, 성별통계 구축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1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당진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원선영/041-350-3693)</p> <p>경제과장 귀하</p>			

##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